법무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11. 25.(수)

“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”, 법무부, 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기준 제시

- “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” 발표 -

법무부(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)는 2026. 11. 25.(수) 09:30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**「2026 선진법제포럼」[1]을 개최**하고, **「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」**을 발표했습니다.

작년 7월 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, 주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
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를 앞두고,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

이에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TF를 구성한 후, **학계·법조계 전문가 의견과 기업의 실무 여건,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**하였습니다.

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**기업이 전자주주총회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**하고 있고, 이에 따라 기업이 준비한다면 전자주주총회 운영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절차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1)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경제법령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경제계·법조계·학계 등 전문가그룹 대상으로 매년 주최하는 포럼임

가이드라인에는 ▲**전자주주총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**(인적·물적 설비 기준, 운영규정 마련, 통신장애 방지 대책 등), ▲**주주 보호를 위한 사항**(사전신청 제도 남용방지, 소집통지를 통한 충분한 정보제공, 주주 질의·발언 제한 기준 마련)을 비롯하여 준비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담았습니다.

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"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은 **국내외 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의 기회를 확대**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.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**주주와 기업 간 소통이 활성화**된다면 **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**됩니다."라고 밝혔습니다.

법무부는 앞으로도 **한국예탁결제원·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** 2026년 12월 중 **시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**하고,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계기로 외국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**가이드라인 영문판을 배포**하는 등 전자주주총회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▨

【첨 부】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부

담당 부서	법무부 상사법무과	책임자	과장	최성수 (02-2110-3167)
		담당자	검사	권영우 (02-2110-4458)
		담당자	전문위원	오석진 (02-2110-3635)
		담당자	법무관	이준승 (02-2110-3759)

붙임 1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목적	주요 내용	
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 보장	통합 운영규정 필요	ㅇ **현장과 전자 주주총회에 통일 적용되는 운영 규정 마련 필요** - 전자출석 주주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현장출석 주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 필요 - ▲주주의 출석 방법, ▲주주 및 대리인의 본인확인 방법, ▲질의 및 발언 제한 기준 등 통일된 운영 규정 마련 필요
	인적·물적 설비 관련 기준 제시	ㅇ **인력 등 내부관리조직의 구성** - 관리기관 위탁 여부와 관계 없이 내부관리조직과 총괄 책임자를 둘 필요 ㅇ **물적 설비 구축** - 주주의 실시간 참가(즉시성, 쌍방향성)가 가능하도록 구축 필요 - 스트리밍 방식상 경미한 지연은 불가피하므로, 충분한 표결 시간 부여 필요 -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시 영상, 음성, 자료화면을 동시 송출 필요
	통신장애 방지 대책 필요	ㅇ **통신장애에 대한 대응 조치 마련 필요** - ▲통신장애 대응을 위해 시스템 및 백업, ▲장애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작성, ▲관계자 교육, ▲위험 발생 시 주주에 대한 사전 고지 등
	통신장애 발생시 총회 연기 속행 방법 제시	ㅇ **통신장애 등으로 전자주주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연기·속행 방법 마련 필요** - ① 전자주주총회 개회 선언 직후 의장에게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권 위임하는 사전 결의 - ② 정관 또는 주주총회 운영규정에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한 조항 마련
전자주주총회 남용 방지	사전신청제 기준 제시	ㅇ **회사가 사전신청제를 주주의 출석제한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은 불가** - 사전신청제는 시스템 용량 확보 및 주주 인증 등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 ㅇ **주주 선별 수단으로 사용 불가** - 사전신청제를 이용하여 회사가 임의로 주주 선별 불가

	소집통지 기재 사항	**ㅇ 주주의 권리행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은 소집통지에 기재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** - 사전신청 기간(마감시한), 접속·인증방식, 질의·발언에 대한 제한 등
	주주 질의, 발언 제한 기준 필요	**ㅇ 사전 통지 필요** - 제한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은 미리 정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포함되어야 함 **ㅇ 기준의 합리성·공정성** - 기준은 총회의 규모, 예상 질의 수, 의제의 중요성, 현장출석 주주에게 적용되는 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함
기타	**개최 의무 대상 회사 판단 시점 및 기준**	**ㅇ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 개최 대상** - 자산총액은 별도·개별 재무제표 기준 **ㅇ 자산총액 2조원에 처음 도달한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 발생시점** - 자산총액 2조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 결의 후 개최되는 주주총회
	본인확인 방법	**ㅇ (국내 주주)** ①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, ②아이핀, 휴대폰 인증 등 **ㅇ (외국인 주주)** 외국인 주주는 위 방법이 불가능하므로,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 등 사용
	의사록 기재 방법	ㅇ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사실, 전자출석 주주의 토론 개요 및 표결방법과 결과를 현장주주총회와 통합·합산하여 기재

※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, 가이드라인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